

4. 해양오염방제 체제 구축을 위한 OPRC 협약 수용방안

해사법학과 이재곤
지도교수 황석갑

그동안 국제사회와 각국은 잇따른 대형 油類污染事故의 대책으로 유류오염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대응 및 국가간의 협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OPRC協約의 채택,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의 충분한 보상을 위한 IOPC FUND 보상한도액의 인상, 유출된 중질유의 제거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등 유류유출사고에 대비·대응 및 신속한 보상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5년에 발생한 씨프린스호 汚染事故를 계기로 油類污染事故에 대한 防除를 위한 대응조직 및 체계를 구축해 왔다. 1995년에는 防除主導機關을 海洋警察廳으로 일원화하고, 1997년에는 民間專門防除機關인 防除組合을 설립하였으며, 1999년에는 범 국가적인 유류오염 대비체제 구축과 인접국가 상호간의 협력체제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OPRC 協約에 가입하면서 國家防除基本計劃을 수립하는 등이 그것이다.

국제적인 방제 공조체제를 구축할 목적으로 제정된 OPRC 協約은 각 당사국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협약 당사국은 내부적으로 방제업무에 대한 主導機關과 協助機關을 정하여야 하고, 자국의 실정에 맞는 國家緊急計劃도 수립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인 국내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國際協約에 가입하기 전에 국내 이행법률을 먼저 정비하는 방법을 취하여 왔었다. 그런데 OPRC 協約에 가입할 때는 특별히 동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단지 國家防除基本計劃 수립을 통해 동 협약 당사국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다. 國家防除基本計劃에서는 국가기관이나 민간기관에게 계획상의 특정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기관이 동 계획상의 업무 수행에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방제기본계획은 계획의 실행이 어려운 것은 물론, 계획 자체의 기능마저 상실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OPRC 협약에 가입하였으므로 협약 자체가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해양오염방지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해양오염방지법이 존재하고 있고, 동 법에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각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위반시 벌칙조항도 두고 있다. 그런데 국가방제계획은 OPRC 협약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있으나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갖고 있지 못하다. 즉, OPRC 협약은 계획 수립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나 강제적 이행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는 해양오염방지 관련 國際協約의 국내 이행법률의 성격을 지닌 해양오염방지법에 동 協約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OPRC 協約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국

내 이행법률의 정비가 시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國家防除體制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OPRC 協約의 주요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국내법률을 정비할 경우 현행 海洋污染防止法 제6장(海洋污染防除措置)에서 각 防除主導機關의 역할 및 管轄範圍를 포함한 필요한 규정을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OPRC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해양오염방지법에 포함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海洋污染防止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海洋污染防除對策委員會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 국가방제기본계획은 결국 국가재난관리계획 중 해양오염방제계획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국가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中央安全對策委員會의 위원이 각 부처의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海洋污染防除對策委員會의構成을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위원은 각 부처의 차관으로 구성하여야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인 국가계획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關係機關의 協助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해양오염방지법 제55조를 삭제하고, 해양오염방지법 제51조의2를 신설하여 관계기관의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관계기관의 범위는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및 국무조정실하고, 각 부처의 협조 내용은 현행 국가방제기본계획의 II-6항(관계기관 협조)을 참조하여 시행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셋째, 각종 防除措置計劃의 수립·시행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다. 해양오염방지법 제51조의 3을 신설하여 海洋警察廳長은 국가방제기본계획, 해양경찰서장은 지역방제실행계획, 항만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안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의 수립방법이나 절차 등 주요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넷째, 海洋오염방제 主導機關을 指定하고, 각 주관기관의 管轄範圍를 정한다. 해양오염방지법 제50조를 개정하여 해안방제 수행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광역시·도지사”로 개정하고, 해상방제와 해안방제의 경계선을 영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선으로 구분하여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한다.

다섯째, 民間防除業體의 活性化을 위한 현행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해양오염방지법 제37조, 제38조 및 제44조를 삭제하여 방제·청소업을 등록요건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방제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할 경우 국가 전체의 방제세력을 확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섯째, 防除教育訓練機關을 指定한다. 海洋污染防止法 제67조 중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교육훈련”을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으로 개정하여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교육훈련기관에 韓國海洋污染防除組合을 추가하고, 제2항의 교육훈련 과정에 유류오염방제교육과정을 신설하여 OPRC 협약 제6조의 의무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이 OPRC 협약 이행을 위하여 海洋汚染防止法을 개정할 경우 이에 맞추어서 현행 국가방제기본계획을 개정하고, 해안방제계획도 수립하여야 한다. 즉, 현행 國家防除基本計劃의 내용 중의 일부를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國家防除基本計劃에는 제5장에서 자세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해안방제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 현행 國家防除基本計劃에 따르면, 海岸防除 主導機關은 地方自治團體와 港灣當局이지만 현재까지 海岸防除計劃을 수립한 기관이 없다. 이 논문의 부록에서 제시한 방안이 海岸防除計劃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양오염방지법의 개정과 별도로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해양오염 방제체제를 재난 관리체제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災難管理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環境汚染事故를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양환경사고의 대표적인 유류오염사고는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에 포함된다. 따라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재난관리법 第12條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가 매년 정하는 국가재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해양유류오염사고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재난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방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동법 第7條의 규정에 의한 中央安全對策委員會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국가방제기본계획이 국가 재난관리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법령을 개정할 필요 없이 시행할 수 있다.

5. 船舶職員法上 乘務基準에 관한 研究

- 小型船舶을 中心으로 -

해사법학과 장 치 영
지도교수 황 석 갑

旅客 및 貨物輸送, 漁撈活動에 이용되는 船舶은 경제규모의 확대와 조선기술의 발달, 수산 및 해운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선박의 용도별 전문화 및 대형화와 각종 장비의 첨단화가 이루어 졌지만 海洋事故는 좀처럼 감소되지 않고 있다.

海洋事故는 船員의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한 人的 要因, 船體 및 機關과 관련된 物理的 要因, 갑작스런 氣象의 變化와 같은 自然的 要因, 國際安全管理規約(ISM Code)에 의한 管理的 要因에 의해서 발생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人的 要因에 의한 海洋事故를 방지하고자 船員의 訓練 · 資格證明 및 當直勤務의 基準에 관한 國際協約(STCW 協約)을 채택 · 발효 시켰고, 국제노동기구(ILO)는 海技士의 資格證明과 定員에 관한 國際協約을 채택 · 발효 시켰다. 그리고 國家는 海上交通安